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예방조정심의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분쟁조정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이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
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기관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평가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등 관련
사이트의 홍보 지원

제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조사2과”를 “조사2과, 사전실태점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조정국장을 보좌한다.

⑨ 사전실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2. 제1호와 관련된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하 이 항에서 “소관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 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5.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공동조사
6. 소관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

회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8.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

금 부과 등 행정처분

9.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10.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68”을 “188”로, 일반직 계 “165”를 “185”로, 고위공무원
단 “5”를 “6”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2”로,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
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3”을 “14”
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연구
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60”을 “68”로, 행정주사
·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보건주사·사회복지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8”을 “5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을 “19”로 한다.

별표 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4. 조사조정국 예방조정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5. 조사조정국 사전실태점검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부칙에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2조 관련)

제12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사회복지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 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생 략)	제3조(대변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u> <u>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u> <u>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u> <u>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u> <u>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u><신 설></u>	<u>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u> <u>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u> <u>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u> <u>및 운영</u> <u>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u> <u>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u> <u>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u> <u>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u> <u>작 및 관리</u> <u>5. 기관장의 정책활동에 대한</u> <u>온라인 홍보</u> <u>6.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u> <u>책홍보 점검·평가</u> <u>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u> <u>에 관한 사항</u> <u>8.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u> <u>및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u>

제7조(조사조정국) ① (생략)

<신설>

<신설>

②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③ (생략)

④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등 관련 사이트의 홍보 지원

제7조(조사조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조정국장을 보좌한다.

④ -----
----- 조사2과, 사전실태점검과-----.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

1. ~ 8. (현행과 같음)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

치 실태조사 총괄

10. ~ 22. (생략)

⑤ · ⑥ (생략)

<신설>

<삭제>

10. ~ 22.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⑨ 사전실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2. 제1호와 관련된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하 이 항에서 “소관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 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5.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공동조사

6. 소관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조사 결과에

	<u>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안전</u> <u>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u> 7. <u>소관규정에 따른 개인정보</u> <u>보호 실태점검·조사 결과에</u> <u>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u> <u>등 행정조치</u> 8. <u>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u> <u>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u> <u>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u> 9. <u>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u> <u>및 행정소송 대응</u> 10. <u>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u> <u>조치 실태조사</u>
<u>⑦ ~ ⑨ (생략)</u>	<u>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u> <u>항까지와 같음)</u>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u> <u>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u> <u>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u> <u>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u> <u>한다.</u>
제12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 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제12조(한시정원) ----- ----- ----- -----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 <u>2028년 12월 31일</u>----- ----- -----.
총리령 제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신 설></u> <u><신 설></u>	총리령 제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u>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168		188	+20	
일	반	직 계	·	·	·	·	·
			·	·	·	·	·
			165		185	+20	
고	위	공무원단	5		6	+1	
·			·	·	·	·	·
서	기	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2	+1	
·			·	·	·	·	·
서	기	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	무	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					
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	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13		14	+1	
보	건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	업	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					
연	구	관 또는 보건연구관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회복지사무 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60</u>	<u>68</u>	+8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사회복지주사 · 공업연구사 · 환 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48</u>	<u>54</u>	+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6</u>	<u>19</u>	+3
· ·	·	·	
	·	·	